

「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 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2011. 10. 27 (목)

산업경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김희수 의원 외 6명

나. 발의일자 : 2011년 10월 11일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10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10월 24일

(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희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우리도의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직무육성품종을 개발·공급하기 위해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행정기구(조직) 명칭의 변경에 따라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(안 제18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송장섭)

- '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행정기구 명칭의 변경에 따라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##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3항 중 “원예생명연구과장”을 “작물연구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시험연구부장”을 “연구개발부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위원회의 설치) ① ~ ② (생 략)</p> <p>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, 간사는 농업기술원 <u>원예</u> <u>생명연구과장</u>으로 한다.</p> <p>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의 <u>시험연구부장</u>, 기술지원부장이 되며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 임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⑤ (생 략)</p>	<p>제18조(위원회의 설치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<u>작물연</u> <u>구과장</u>-----.</p> <p>④ ----- <u>연구개발부장</u>, 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